

제 1445 호  
1988. 7. 2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고 건  
 편집인 : 공 보 관 반 중 담  
 전 화 : 731-6111-3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35-3837

# 시 보

## 차 례

● 조 례

제2490호	서울특별시한강수상이용시설의설치및은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3
제2491호	서울특별시농수산공업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제2492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	3
제2493호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	4

● 규 칙

제2291호	서울특별시정책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제정규칙.....	9
--------	-----------------------------	---

(이면계속)

공										
관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 고 시

제351호	시영아파트(영구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0
제352호	시영아파트(영구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0
제356호	중계지구시영아파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0
제357호	한강수상이용시설의사용료	11

● 공 고

제584호	관인재교부공고	11
제619호	영동토지구획정원사업계획변경(기건연기)인감	12
제620호	품질관리등급의표시정지처분	12
제623호	도시계획사업공원시범분(노인정)설치시행계획에따른공방공고	12
제631호	2중전기공사업체행경처분	13

● 구 고 시

제 6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변경인가	13
제 67 호	도시계획사업(시장)변경인가	14
제287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5

● 사업소고시

제 16 호	하천의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	15
--------	---------------	----

● 사 령

● 공지사항

조 례

●서울특별시조례제2490호

서울특별시한강수상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수상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사용료) ①수상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받는다. 사용료는 시장이 당해시설의 규모, 투자비 및 기존 타시설의 사용료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시민, 근로청소년, 경로우대중 소기자등으로서 사용료등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2.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는 각급학교의 학생으로서 소속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별활동에 참가하는 자
3. 기타 특히 사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이용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이용시설 운영의 위탁을 받은자 (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이용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2491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500억원"을 "3천 50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2492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입장료등의 징수, 녹지의 이용기준, 원상회복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본문(각호를 제외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입

장료를 잠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에 대하여는 임장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유공자애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자

제17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7조 내지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녹지의 이용허가)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내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녹지이용허가신청서에 이용장소표시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녹지의 세부이용기준)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내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출 것
2. 지하시설물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는 3미터 이상을 유지할 것
3. 녹지내 지하에 독립된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필요한 부속시설의 일부를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크기를 최소화하고 성토, 차폐, 수목식재등의 조경기법으로 돌출부위를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제19조(녹지의 원상회복)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의 이용허가를 받은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용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녹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2)의 서울대공원증 주차장사용란 및 수하물보관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남산공원증 전담대입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담대입장	어른1회당	1,200	부가가치세별도
	청소년1회당	800	
	어린이1회당	800	

(별표5)중 점용허가신청란을 잠용 및 이용허가 신청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2493호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건축심의) 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총전의제3조) 제16호를 다음과

<p>같이 하고, 동조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6. 분뇨·쓰레기 처리시설</p>	<p>제11조(건축심의) 시장등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21. 영 부표 제4항(근민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와 제7호내지 9호(사건과, 독서실, 표구정, 예능계 강습소 제외)에 해당하는 건축물</p>	<p>제12조제1항제1호·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22. 아파트</p>	<p>1. 도매시장·소매시장(백화점 소공동센터 및 대형점을 제외한다)</p>
<p>제7조 본문(각호를 제외한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1. 자동차관련시설</p>
<p>다만, 담장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건축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시장등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의 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2. 동물관련시설</p>
<p>제10조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13. 분뇨·쓰레기 처리시설</p>
<p>1. 제1종 미관지구: 상업지역등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p>	<p>14.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공동주택·기숙사</p>
<p>2. 제2종 미관지구: 상업지역등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p>	<p>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p>
<p>3. 제3종 미관지구: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p>	<p>②제2종 및 제3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p>4. 제4종 미관지구: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주거 및 생활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미관지구</p>	<p>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p>
<p>5. 제5종 미관지구: 제1종 내지 제4종의 미관지구외에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p>	<p>1. 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건축물</p>
<p></p>	<p>3. 관광진흥시설(관광진흥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 한한다)</p>
<p></p>	<p>제12조제5항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p>	<p>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등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주차전용건축물</p> <p>2.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에 건축하는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p> <p>3. 세차장·다만 제1종·제2종 미관지구 및 전용주거지역안의 미관지구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단위: 제곱미터)</p> <table border="1"> <thead> <tr> <th>층 의 수</th> <th>건 축 면 적</th> </tr> </thead> <tbody> <tr> <td>3 층</td> <td>100</td> </tr> <tr> <td>4 층, 5층</td> <td>150</td> </tr> <tr> <td>6 층 내지 10층</td> <td>250</td> </tr> <tr> <td>11 층 내지 15층</td> <td>400</td> </tr> <tr> <td>16 층이상</td> <td>700</td> </tr> </tbody> </table>	층 의 수	건 축 면 적	3 층	100	4 층, 5층	150	6 층 내지 10층	250	11 층 내지 15층	400	16 층이상	700
층 의 수	건 축 면 적												
3 층	100												
4 층, 5층	150												
6 층 내지 10층	250												
11 층 내지 15층	400												
16 층이상	700												
<p>제13조본문(각호를 제외한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다만,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의 미관지구의 기존대지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제곱미터로 한다.</p>	<p>제18조 제2항단서중 "시장"을 "시장등"으로 한다.</p> <p>제19조제3항 및 제4항중 "시장"을 각각 "시장등"으로 하고, 동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p>												
<p>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시장"을 "시장등"이라 한다.</p>	<p>제21조제8호를 다음과같이 하고, 동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①제1종·제2종 및 제4종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각호와 같다.</p>	<p>8. 분뇨·쓰레기 처리시설</p> <p>15. 영부표 제4항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와 제7호 및 제8호의 건축물과 제9호중 장의사·동물병원</p>												
<p>1. 제1종 미관지구: 5층이상</p> <p>2. 제2종 미관지구: 3층이상</p> <p>3. 제4종 미관지구: 2층이상 4층이하.</p> <p>다만, 시장등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22조를 제22조의2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22조(건축심의): 시장등이 업무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③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안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공공건축물인 학교·복합소·동시무소·우체국등과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등이 인접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장등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면적이하로 할 수 있다.</p>	<p>제22조의2(중전의 제22조) 제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4. 분뇨·쓰레기 처리시설</p> <p>1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p>												
<p>제2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22조의3(건축물의 모양) ①시장은 업무지구안에서 업무환경의 유지를 위하여</p>	<p>제2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22조의3(건축물의 모양) ①시장은 업무지구안에서 업무환경의 유지를 위하여</p>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규모·양식·구조·형태·색채·재료를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규모 등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장(제28조)을 삭제하고, 제9장을 제8장으로 한다.

제29조의2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제10장을 제9장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영제15조제2항제1호”를 “영제15조제3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5항중 “영제15조제2항제2호”를 “영제15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중 “영제15조제3항”을 각각 “영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35조를 제34조의2로 하고,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건축물 부설 미술장식품의 설치)  
 ①시장등은 영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건축비용의 1/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할수 있다.

- 1. 11층이상 건축물
- 2. 10,000㎡ 이상의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은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자인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0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대지면적 최소한도

제3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영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별표1과 같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0조제1항 및 영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별표2와 같다.

제41조를 제41조의3로 하고,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설치)법 제44조의2 및 영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및 구에 각각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1조의2(총천의 제41조) 제2항중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4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①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의2(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의3(소위원회) ①위원회가 필요할 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제42조 및 제42조의 2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2조의 4(전문위원) ①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건축, 도시설계 및 도시계획, 조경, 회화,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등이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등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44조의 2(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운영계획) 제41조 내지 제45조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의2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기계양대는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밧줄 등의 피난설비를 화재등 위급한 때 인명구조용으로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8조제3항중 "별표2"를 "별표3"으로 한다.

제50조중 "제5조 단서규정 및 제36조"를 "제5조단서·제13조단서 및 제36조"로, "기준시로 부터 10년간에 한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2)를 (별표3)으로 (별표1)을 (별표2)로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미분지구안의 기존대지에 대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본문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에 시행당시 이미 분할된 대지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기존 대지상의 건축물의 재축등에 대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관한 경

과조치) 이 조에 시행당시 이미 분할된 대지에 있는 기존건축물의 재축·개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35조의 규정정액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60제곱미터,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로 한다.

(별표1)

대 지 면 적 최 소 한 도

(단위:㎡)

용 도 지 역	대지면적 최소한도
전 용 주 거 지 역	200
일 반 주 거 지 역	90 (특정지구: 165)
준 주 거 지 역	90
중 심 상 업 지 역	300 (특정지구: 660)
일 반 상 업 지 역	200 (20M이상 도로에 접한대지: 330)
근 원 상 업 지 역	150
전 용 공 업 지 역	330
일 반 공 업 지 역	330
준 공 업 지 역	200
보 전 녹 지 지 역	350
생 산 녹 지 지 역	200
자 연 녹 지 지 역	600

비고: 특정지구는 서울특별시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및 서울특별시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도 한다.

서울특별시정책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폐지규칙

서울특별시정책자문위원회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규 칙**

1989. 7. 18

부 칙

◎서울특별시규칙제22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351호

시영아파트(영구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서울, 성산지구(서부위생처리장 후격지)시영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4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1989. 7. 20

서울특별시

1. 사업명: 성산지구 시영아파트(영구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성명: 도시개발공사  
주소: 서울시 중구 경동 1-8
3. 사업 시행지  
가. 위치: 서울 마로구 성산동 350-1의 56필지  
나. 대지면적: 41,201㎡  
다. 사업규모: 영구 임대 아파트 1,807세대
4. 사업시행기간: 1989.8-1991.7

◎서울특별시고시제352호

시영아파트(영구임대)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서울문득지구(건설자재사업소후격지)시영아파트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4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고시 합니다.

1989. 7.

서울특별시

1. 사업명: 면목지구 시영아파트(영구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성명: 도시개발공사  
주소: 서울시 중구 경동 1-8
3. 사업 시행지  
가. 위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산72-6의 6필지  
나. 대지면적: 24,832㎡  
다. 사업규모: 영구임대아파트 902세대
4. 사업시행기간: 1989.8-19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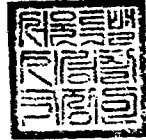
◎서울특별시고시제356호

중계지구시영아파트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중계지구 시영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4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고시 합니다.

1989. 7. 20.

서울특별시

<p>1. 사업명: 중계지구 시영아파트 주택건설사업</p>	<p>용과같이 이통 고시합니다. 1989. 7. 20.</p>						
<p>2. 사업주체 성명: 도시개발공사 주소: 서울시 중구 경동1-8</p>	<p>서울특별시 수상 이용시설의 사용료</p>						
<p>3. 사업시행지 가. 위치: 서울 노원구 중계지구 토</p>	<table border="1"> <tr> <td>대상</td> <td>사용구분</td> <td>사용료</td> </tr> <tr> <td>보트</td> <td>1척당 1시간</td> <td>500원</td> </tr> </table>	대상	사용구분	사용료	보트	1척당 1시간	500원
대상	사용구분	사용료					
보트	1척당 1시간	500원					
<p>지개발사업지구내 (103, 106, 112, 114 B/L) 나. 대지면적: 215,612.1㎡ 다. 사업규모: 시영아파트 10-15층 7,040세대 · 분 양: 14동 2,433세대 · 일 대: 15동 2,168세대 · 영구임대: 10동 2,439세대</p>	<p>공 고</p> <p>◎서울특별시공고제564호</p> <p>관인재교부공고</p> <p>서울특별시 산하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의 관인용 관인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8조와 서울특별시 관인 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교부함을 동규정 제9조 및 동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p>						
<p>4. 사업시행기간: 1989. 8 - 1991. 2</p>	<p>1989. 7. 20. 서울특별시</p>						
<p>◎서울특별시고시제357호</p> <p>한강수상이용시설의사용료</p> <p>서울특별시 한강수상이용시설중 보트용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수상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사용료) ①항에 의거 다</p>	<p>1. 사용개시일자: 1989. 7. 4. 2. 사용 및 폐기 관인내역: 아래와같음 ·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인</p>						
<p>승 인 인 영</p>							
<p>인 영</p>	<p>폐 기 인</p> 	<p>재 교 부 인</p> 					
<p>공인명 서울특별시경찰국장인</p>							

**◎서울특별시공고제619호**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기간연기)인가**

1. 건설부 고시 제6호('68. 1. 18) 및 제 77호('71. 8. 24)로 사업시행인가된 영 동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지구중 환지 획정 처분 미완료된 반포, 아파트지구 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기 간연기)인가 하였고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 시개발과와 강남, 서초구청 도시정비과 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개별통지 는 본공고로 갈음합니다.

1989. 7. 15.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계획 변경(기간연기) 내용

지 구 명	시 행 면 적	시 행 자	사 업 시 행 기 간		비 고
			당 초	변 경	
영동지구	26,764,872.9㎡중 5,421,066.6㎡	서울특별시장	68. 1. 18 -89. 6. 30	68. 1. 18 -89. 12. 31	6개월연장

**◎서울특별시공고제620호**  
**품질관리등급의표시정지처분**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장 품질관리 등급 에 대한 표시정지 처분하고 이를 공고 합니다.

1989. 7. 20.  
 서울특별시 장

1. 사 정 공 장 명 : 진일과학  
 2. 대 표 자 : 류 병 유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 당1동 1007-2  
 4. 사 정 등 급 및 사 정 번 호 : 2등, C가 2 울-401

**◎서울특별시공고제623호**  
**도시계획사업공원시설물(노인정)설치 시행계획에따른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17호(89. 5. 3) 로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일부 변경결 정 및 지적승인된 서초 제1어린이공원 내 공원시설물(노인정) 설치 시행 계 획에 대하여 서류의 공람 및 의견 청 취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공원녹지와 동 마. 사업기간: 89. 7. 20 - 89. 12. 31.  
 서초 제3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1989. 7. 20.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경우 서울특별시  
 공람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631호

가. 사업시행지: 서초구 서초동 685번  
 지 서초 제1어린이공원 제2중전기공사사업채행정처분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공원시설(노인정) 설치 시행계획 등 제1종 전기공사업채 행정처분(연호주  
 소)을 철회하였기 이를 다음과 같이  
 할공고 정정 공고합니다.

다. 사업시행지: 서초 3동 노인정 전  
 임추천위원장 박창운외 1인

라. 사업규모 및 내용: 노인정 81.25㎡  
 (1층 40.625㎡, 2층 40.625㎡) 1989. 7. 20.  
 서울특별시장

- 다 음 -

면허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1017	동서전력공사	정수익	방배동851-3	전기공사업법 제7조 및 제12조 제1항(소계지변경 신고미행)	면허 취소
1274	건전실업(주)	김용진	반포동648-3	"	"

**구 고 시**

●구로구고시제67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193호(89. 2. 24)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시설(도로및하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관한 위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도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의 비치하여 토지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합니다.  
 1989. 7. 20.  
 구 로 구 청 장

1) 사업의 시행지: 구로구 가리봉동 28-63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및 하수도): 가리봉동28-63단지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도로 B=12-6m L=130m  
하수도 D=450m L=65m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5) 사업착수및 준공예정일: 인가일-1989.12.31

6)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변경): 아래와 같음

7) 토지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아래와 같음

**변경 토지 및 건물 조서**

번호	당 초			변 경			비고
	소재지번	주소	성명	소재지번	주소	성명	
1	가리봉동 83-32	가리봉동 83-11	윤석노	가리봉동 83-11	가리봉동 83-11	윤석노	물건 조서
2	83-31	83-10	이안태	83-10	83-10	이안태	"
3	83-82	83-82	정성모	83-8	영등포6가 131	정성모	"
4	83-6	83-6	허명희	83-6	가리봉동 124-1	허명희	"
1	83-11	83-32	최옥배	83-11	83-28	최옥배	시설물 조서
2	83-10	83-32	정기선	83-10	83-10	정기선	"

●구로구고시제72호  
도시계획사업(시장)변경허가

1. 구로구 고시 제63호(88. 8. 5)로 시행허가한 도시계획사업(시장)을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7. 20.  
구로구청장

가. 사업 시행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50-6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시장)

다. 사업시행지 주소: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50-48(고척개발구역)  
성명: 대표 박사권

라. 시행규모: 대지면적 4,011㎡  
건축면적 2,128.50㎡ 연면적: 9,876.85㎡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당초: 88. 9. 20.-89. 5. 31.  
변경: 88. 9. 29.-89. 12. 31.

바.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14조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생략)

사.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생략)

아. 사업계획: 기허가사항과 동일(생략)

◎서초구고시제287호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9. 7

서 초 구 장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자: (주)우성건설 직장주택조합의 26개 조합, 대표조합장 서정완.
3. 사업시행지외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건설위치: 서초구 양재동 154-2의 25필지

- 나. 대지면적: 38,256㎡ (11,572.39평)
- 다. 건축면적: 6,168.39㎡ (1,865.93평)
- 라. 건축연면적: 79,857.71㎡ (24,156.88평)
- 마. 건설규모: 아파트 1215층, 10동 794세대
4. 사업시행기간: 1989. 7 - 1990.12.31

사업소고시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16호

하천의 점용 허가기간 연장허가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 하였던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89. 7. 21

한강관리사업소장

허가 년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받은자	
						주 소	성 명
1989 7.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양동 427-7번지 (한강)	하천	510㎡	유선장 설치	1989. 7.14 -1990.7.13	서울특별시 중로구관철동 11-14	(주)도알관광 개발 대표이사 박 의 철

사 령

◎1989년 7월 19일자

6급이하 공무원 전보

령제298호

성 명	발령사망	현부서	직 급
신영우	예산담당관	업무과	지방행정주사
안중선	세종문화회관	선유수원지사사무소	"
조영택	선유수원지사사무소	강동구	"
윤경남	성북구	마포구	지방행정서기
이피행	공무원교육원	중구	"
윤대현	서울시립대학교	세종문화회관	"
신화경	자동차관리사업소	마포구	지방행정서기보

◎1989년 7월 20일자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파견		령제30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최병진	새종문화회관 파견 (‘89. 7. 20)-벨도지사시까지)			동대문구	지방건축기사보		
공무국의 여행명령							
(‘89. 7.19)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종합건설 본부	지방 기계기사보	김상경	일본	89.7.24 -7.31 (8일간)	계약자 부담	발당수원지용기자재 검사및 정수처리장 견학	
	지방 전기기사보	박중훈					
	수원기전과 전기기사	김기호					
여행명령사항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유희체육 준비단장	관리관 서기관 기획담당관 문화담당관	김인동	스위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89. 7.28 -8.10 (14일간)	시비 (\$15,484)	서울유희체육관관리 방안 도색을 위한 자료수집	
		전영호					
		신수목					
강서구 청장	이사·관	유중호	일본	‘89. 7.28 -8. 3 (7일간)	일본J.C 강서구청	일본J.C부사시연함 최초청 방문및 한일 친선협회 강서구 자 매도시 방문	
건설자재 시험소	토목기과 토목기사	강순천 변동규	영국	‘89. 8. 3 -8.17 (15일간)	계약자 부담	건설자재시험장비구 입에 따른 시험기술 습득	



## 공무국의 여행명령

('89. 7. 21)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구로구	지방행정주사	박대근	싱가폴	'89. 7. 28 - 8. 1 (5일간)	구도구청부담
	토특기사	박만옥			
	행정주사보	윤두지			
"	지방행정주사	강승희	대만	'89. 8. 3 - 8. 6 (4일간)	"
	지방행정주사보	임의상			
	행정서기	배병한			
"	지방행정주사	한덕천	일본	'89. 8.14 - 8.19 (6일간)	"
	보건기사보	유영택			
	건축기원	배을춘			
		한형수			

서울특별시장

## 공지사항

## 공개승진 시행

문 : 당해직급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예 : 3년)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요망

답 : ○ 직급별로 일정기간이 지난공무원 모두를 승진시험에 응시도록 하는 제도는 공개승진 시험제도로써 현행 제1공무원 제39조의 2 제3항에서 5급식의 승진공무원에 한하여 공개승진 시험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 이는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현행 제도에 의한 승진을 기다리는

상위서열자의 탈락등으로 인한 위치 질서둔란, 공부만하며, 일정기간이 지나 시험에 합격만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전념하지 않는 업무기피현상등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것으로 보며,

○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은 경력, 교육훈련성적, 그리고 당해직급에서의 근무성과파 능력을 평정하여 승진대상자 순위를 정하여 심사 또는 시험으로 승진하는 현행제도는 이런제한문제를 검토해 연구한 최선의 방법으로 현행법령에서 채택 운영하고 있음

점기적인 승진시험의 실시

문 : 우리시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시험의 실시시기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시기를 정하여 실시요망

답 : 6급이하 하위직 승진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상위직의 결원이 있을시 승진시킬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원인원의 확정없이 승진 시험을 시킬수 없음

문 : 승진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승진임용은 결원시 실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 : 시험에 합격하였을지라도 결원이 날 때 까지는 장기간 소요되어 승진시에는 승진서열권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불가하여 승진시험은 합격하고도 승진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모순이 초래됨

부서간 상이한 특수지 가점 재검토 건의

문 : 현재 지정되어 있는 가점부서간에도 기관별로 월가점의 차이가 나고 있는바, 특수지 근무가점 부서지정의 재검토 건의

- 동사무소 : 월 0.07
- 공무원교육원 : 월 0.1
- 민원실 : 월 0.15

답 : ○ 특수지 근무가점을 현행규정상 2.5점 범위내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정부의 인사정책에 따른 것으로

- 교육훈련기관은 월 0.1점
- 민원처리분야는 월 0.15점을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인사규칙에 이를 규정하고 있음

○ 동사무소의 경우 현행 월 0.07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내무부 산하 읍.면.동의 월가점 0.05점보다 많은 점수이며, 이와 별도로 승진 시험시 시험가점 혜택도 최고 10점 까지 부여하고 있음

○ 특수지 근무가점 제도의 근무처 지상 수당규정에 정한 특수지 갑, 을, 병지 및 기타 분야별 직무성격, 취약요건등에 비추어 확실적인 가점적용을 곤란한 사항임.

○ 향후 직제개편등에 따른 가점부서의 조정및 직가점의 재검토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간호직 전보기준

문 : 일부 보건소 소속 간호직 경우 근무지와 주소지가 맞지 않아 출, 퇴근에 애로를 받고 있는 직원이 많은데 간호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전보 기준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답 : '89. 8. 1자 의회직(간호직)공무원 직급체계 개편에 따른 제급부여 인사발령을 계기로 간호직 공무원에 대한 출,퇴근 불편의 인사고충은 물론 그간 병원,장기근무자에 대한 보건소 순환 근무를 아래와 같은 전보기준을 적용, 인사관리에 공평을 기하도록 할 것임.

○ 이번 간호직공무원 인사전보 기준과 내용은 시립병원 계속3년이상 장기근무자131명중,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52명을 제외한 79명을 전원 보건소로 전보

○ 그자리에는 본청, 사업소,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순으로 하되, 시립병원의 진료업무 등 상을 감안하여

6급의 경우에는 52세이상자, 7급의

경우에는 50세이상자는 병원으로 전보하지 않고 그대로 현보직에 투입

○ 아울러 병원 또는 보건소로 수임대상자중 원거리 통근자등 1명도 75명씩 임용하는 경우지 인건비 등을 배치하여, 교통비등도 보충수당을 해소해 나가도록 할 것임.

\* 인사상담신청방법 : 매주 화요일까지 인사과에 신청